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규정 철폐건의

LPG사업자

최근 우리회와 LPG 양수입사, 판매업계는 공동으로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는 가스공사의 공급규정을 철폐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정식 요청했다.

1. 저희 LPG업계의 연명 건의(한가연 제01-45호)에 대하여 귀부에서는 막연하게 “LPG업계의 염려를 가급적 감안할 예정”이라 회신한 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회답을 듣고자 재차 본 건의를 드립니다.

2. LNG는 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고, LPG는 배관망이 없는 도심외곽 및 농·어촌에 탱크로리로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탱크로리를 통한 LNG공급 확대는 수송 및 저장에 대한 물리적 특성 차이 및 가스산업 전체의 투자 효율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LNG의 LPG시장 잠식을 더욱 가속화하여 LPG산업을 고사상태로 내몰게 하는 것인 바, 천연가스 공급규정중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전면 철폐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한편,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스공사는 탱크로리를 통한 LNG 공급 요금 책정을 위하여 귀부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제는 귀부에서도 LNG보급확대정책에 희생되어온 LPG산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재고해보아야 할 상황이라 판단되며, LPG와 LNG의 효율적인 배분과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방지가 필요한 바,

5. LPG와 LNG 산업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LPG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LNG에 대한 요금 및 정책 등이 수립되기를 건의하며, 귀부의 조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오니 적극적인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9월 6일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수방

한국LP가스공업협회 회장 남석우

SK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재수

LG-Caltex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준상